



【국내여행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여행

2. 보험종목의 명칭 : 국내여행보험

3. 보험의 목적

- 1)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 2) 피보험자의 신체
- 3) 법률상의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없음

7. 기타

1)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
-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2)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3)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표준형(자기부담금 20%형)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선택형(자기부담금 10%형)의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교차 판매하지 아니한다.

4)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적용대상(단체계약 제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보험료 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

5)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의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

- ①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
- ②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체크박스)을 표기함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

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